

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'이음' 예산 편성지침(안)

항목	내역	내용												
인건비	실무자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무자 인건비 : 회차당 70,000원 이내 - 사업관리(회계, 사업관리 등/1일 기준 4시간 이상)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- 전체예산 중 최대 10% 이내만 책정가능 - 근무확인서 작성 및 계좌입금(월별 지급)이 원칙 												
	주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 강 사 : 시간당 60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의확인서 작성 및 계좌입금(월별 지급)이 원칙 												
	보조 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조강사 : 시간당 40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의확인서 작성 및 계좌입금(월별 지급)이 원칙 												
	특강 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강강사비 :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- 특강강사는 1회차에 한해 운영가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(최초 1시간) 25만원 (초과 매시간) 12만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°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°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°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°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,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°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·소양·외국어·전산 강사 제외) °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(최초 1시간) 15만원 (초과 매시간) 8만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°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°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° 원어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 °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(최초 1시간) 10만원 (초과 매시간) 5만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°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(외부 경력 포함) 또는 3년 이상(자치인재원 경력) 강의 경력자 °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지급금액	기준	1급	(최초 1시간) 25만원 (초과 매시간) 12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°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°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°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°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,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°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·소양·외국어·전산 강사 제외) °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	2급	(최초 1시간) 15만원 (초과 매시간) 8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°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°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° 원어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 °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	3급	(최초 1시간) 10만원 (초과 매시간) 5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°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(외부 경력 포함) 또는 3년 이상(자치인재원 경력) 강의 경력자 °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
	등급	지급금액	기준											
1급	(최초 1시간) 25만원 (초과 매시간) 12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°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°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°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°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,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°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·소양·외국어·전산 강사 제외) °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												
2급	(최초 1시간) 15만원 (초과 매시간) 8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°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°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° 원어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 °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												
3급	(최초 1시간) 10만원 (초과 매시간) 5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°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°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(외부 경력 포함) 또는 3년 이상(자치인재원 경력) 강의 경력자 °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				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25,000원 초과 시, 원천징수 필수 / 인건비 중복지급 불가 												
재료비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재료 및 교육자료 제작비 - 소모성 교육재료, 교육 운영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 ※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 												

홍보비	홍보물 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수막, 리플릿, 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
임차료	장소 대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소대관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-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료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가능 ※ 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, 단체보유시설 및 운영인력 관련 장소 집행 불가
	기자재 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기자재 임차 : 수강생용 기자재(악기 등)
운영비	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과비 : 3,000원 이내 / 1인 1회 기준 - 참여자 대상 다과비 집행 시 : 매회 집행 불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과비는 전체 예산 중 10% 이내만 편성 및 집행 ※ 다과비 지출 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및 사진 제출 필수 ※ 내부 관계자(실무자, 강사)로 구성된 다과비는 불인정이며, 반드시 외부 관계자와 함께 진행 (회의록 내 명단 작성 필수) 	
공공요금 및 제세	우편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 진행 시 발생하는 우편료, 행사보험료 등
	행사 보험료	

□ 보조금 집행 불가 사항

구분	내역
자본적 경비	-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신전화 설비 등
단체운영경비	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, 인증서 발급비, 차량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) 등
용역성 경비	- 연구기관, 연구소,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
현금성 경비	- 기부금, 진료비, 시상금, 상품권, 기념품, 장학금 등
업무추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순진행비 등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 - 예비비,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-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회, 대의원회의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- 원천징수 등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- 이체 수수료(은행수수료)